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231

발의연월일: 2024. 12. 5.

발 의 자:김영배·강유정·김동아

김영호 • 한정애 • 문금주

한병도 • 이학영 • 윤후덕

문정복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4년 12월 3일 내란에 준하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시,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국회의 질서 유지 및 경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지시를 우선적으로 따랐어야 했음에도 행정부의 경찰청 명령을 따라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등 혼란을 가중하였다.

따라서 경찰청으로부터 파견받는 경찰공무원의 업무가 국회 질서 유지 업무임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.

이에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회경비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, 국회경비대는 국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(안 제144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4조의2(국회경비대) ① 의장은 회기 및 폐회 중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운영위원회 의 동의를 받아 국회경비대를 둘 수 있다.

- ② 의장은 국회경비대에 필요한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.
- ③ 국회경비대의 경찰공무원은 의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- ④ 국회경비대의 조직, 업무 지역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44조의2(국회경비대) ① 의장
	은 회기 및 폐회 중에 국회규
	칙으로 정하는 국회 인근에서
	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
	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
	국회경비대를 둘 수 있다.
	② 의장은 국회경비대에 필요
	한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정부
	에 요구할 수 있다.
	③ 국회경비대의 경찰공무원은
	의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	④ 국회경비대의 조직, 업무 지
	역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
	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